(參照)

성남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
검 토 보 고

의 안 번 호	1018

2001 2. 9.

1. 제안이유

○ 본 규칙의 제정은 지방의회 의원의 공무 국외여행에 대한 지침(기획 13130-11931, 2000.11.24)이 변경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의 필요성과 적정성등을 심사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함으로써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원 국외연수가 이행되도록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을 보면

○ 성남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규칙 제1조는 목적을

○ 동 규칙 제2조의 적용 범위는 외국정부 차원의 공식행사 초청, 3개국이상의 국제회의 참가, 자매결연체결, 교류행사를 위한 출장, 기타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외국여행을 하는 경우로 하고

○ 동 규칙 제4조는 심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으로

- ㅇ 심사위원으로 성남시의회 의원, 대학교수, 시민, 사회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하며

ㅇ 위원회에서는 공무국외여행의 여행기간, 여행국가수, 경비등을 심사하며

○ 동 규칙 제5-6조에서는 국외 여행계획서 및 국외여행 결과 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

3. 검토의견

○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예산편성지침의 변경으로 지방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에 관한 준칙안이 시달됨에 따라 본 규칙을 제정하므로써 복잡하고 급속한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시민의 기대에 부응함은 물론 적은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이라 사료되나

○ 동 규칙 제4조의 심사위원회 구성에서 위원으로 시민과 사회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것은 시민들로부터 인증받은 시민의 대표인 의원의 활동사항에 참여한다는 것으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됩니다.